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제언

Proposal for Success of Five-Year Occupational Injury Prevention Plan



글 / 朴 武

(Park, Moo Il)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품질 및 안전보건 경영 심사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교수,

한국기술사회 이사/홍보위원.

E-mail : ed3100@hanmail.net

같은 사업내용에서도 이상적인 희망보다는 현실
적(Initiated)으로, the Ministry of Labor는
이 분야에 (dedicated)에
기술적(technical)에
(1) Having a considerable decrease of
자(overall)로, low safety
awareness and lacking proper
measures in
Taking a lesson from the above facts, we
hereby present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Injury Prevention Plan (2005-2009).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그간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그 성과도 컸으며 또
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여 지속적인 시책을 수행
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팔목하게 예방되지 않고 지
난 제1차 5개년계획에서도 재해감소의 목표가 달
성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국가사회의 전반적으로
낮은 안전 수준과 의식이 더 큰 문제이지 노동부
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적인 책임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제2차 5개년계획이 소기의
성과달성 바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
다.

1. 계획내용의 구체성결여

계획내용은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사
업별 구체적인 목표나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사업반영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어 5개년계획에 반영된 각 사업의 지속적
인 수행여부가 불투명하여지고 나아가 전체 목표
달성도 불확실하여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사업이 광범위하고 이상적인 내용들이 나
열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부분이

이 는 사업장 종사자들 자신의 자발적인 참여 없
이는 불가능하므로 계획의 추진전략의 "자율 활
동촉진과 사업장 책임강화" 사업에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는 동기부여방안이
강구되고 강력히 시행되는 조치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동기부여 방안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작업자 개인과 협력회사 등에 실질적인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다.

(2) 사업장 안전보건평가기준 개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의 참여를 위하
여 계속실시 할 계획인 재해건수에 의한 평가와
무재해운동기준인 4일 이상의 재해관리는 자율적
인 참여 유도보다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재해건
수만 나타내지 않게 하려는 폐단을 나왔다.

즉 산재보상보험처리의 억제, 공상처리, 타 보험
으로 처리 등으로 인위적인 산업재해건수 감소에
만 치중하므로 재해발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동종재해가 계속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안전보건평가를 현재의 재해건수
에 의한 평가에서 OHSAS 18001과 같은 국제규

격을 골격으로 다면평가기준을 정립하여 평가를 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이 경우 재해 감소는 물론이요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수준도 향상되고 전문가 활용과 양성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다.

(3) 무재해운동의 기준개선

현재의 무재해운동에서 무재해기준을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것을 1일 이상으로 하여 사업장에서 무상해까지도 관리가 되도록 하되 무재해사업장 평가기준도 위 (2)항의 평가에 연계하여 실시하면 중대재해까지 자연히 감소되는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이다.

(4) 사업재해조사 및 원인분석의 전문화

재해분석 자료는 정책과 대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모든 재해 자료는 반드시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지역별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노동사무소 또는 산업안전공단에 설치)하여 외부전문가에 의거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엄정한 재해 자료가 생산되도록 한다.

위 사항들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의 선행은 제2차 5개년계획 추진전략의 주요과제인 “취약부문 중점관리” “자율예방활동 촉진(노사참여, 자율예방체제, 민간전문가 및 기관 질제고)”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가 달성될 것이다.

2. 교육홍보의 내실화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효과적인 과급은 사업주의 인식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들과 연계하여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많은 부분의 법정안전보건교육이 기업규제완화조치로 면제 상태로 되어있어 이의 시급한 개선이 요망되지만 사업장 안전보건평가기준에 사업주의 자세 및 교육이수여부

사업장 내의 교육실시 및 교육내용(질) 포함시켜 평가하면 사업장에 자율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안전보건교육은 목표를 양에 두지 말고 내용을 중시하는 질 관리가 되도록 과정, 교과내용 등이 다각화 다층화 되어야 한다.

3. 자원의 총동원

우리의 산업안전보건 기관은 노동부(산업안전국,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공단, 민간기관 및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역할분담 및 통합과 집중관리가 미흡하여 자원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특히 민간기관과 전문가의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약하기 짝이 없어 이 결과는 자연적으로 영세하고 능력향상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의 주체는 사업장이 되어야 하고 가장 바람직한 체제는 사업장이 스스로 앞서고 민간기관과 전문가가 이를 돕고 정부 측과 법정기관은 법과 정책과 재원으로 원격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 측은 정책수립과 법의 엄정한 집행, 산업안전공단은 영세사업장지원 민간기관과 전문가 지원 및 기초연구에 주력하며, 사업장은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하되 필요시 민간기관 전문가 법정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이의 총괄은 정부 측이 그 역할을 함으로서 분담과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져 가용자원을 총동원되도

록 하여야 계획의 목표가 무난히 성취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고 접수일 2005년 7월 15일>